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4621(본소), 2020나14638(반소) 판결

[매매대금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안동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준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1.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51624(본소), 2019가합 51195(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감축한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3,0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3,0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매매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매매대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인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1)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게 3,105,4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B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C: 원고는 피고 C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C은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0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3. 본소에 관한 판단’을 ‘3. 본소 중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20행, 제19쪽 제13행, 제20쪽 제10행 중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을 제16호증의 51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즉 2017. 8.경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무효 조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을

제16호증의 51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을 제16호증의 51 매매계약서를 M과 피고 C이 함께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C이 위 매매계약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M에게 전송하고 M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 C은 원고와의 통화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는 매매대금이 35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6호증의 129),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용으로 을 제16호증의 5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6호증의 5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4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 C의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성립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3,105,4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은 일부 청구로서 위 매매대금 중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C의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 C이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A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의 지급도 구한다.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주요부분인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 합의가 없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잃었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사우나와 헬스장의 매출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고지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00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무효 조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 또는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사우나와 헬스장의 매출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상금 채권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돈 등에 관하여 구상을 한다는 것인바, 피고 C의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8. 12.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에게 포괄적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포괄적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포괄적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각 분양권 및 부동산의 가액 합계 885,200,000원에서 이미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한 함안토지 가액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5,200,000원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503,00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고, 설령 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포괄적양도양수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

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포괄적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자는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각 분양권 및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에 R, S, K(이하 'R 등'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은 위 R 등이 부담할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 피고 C이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AJ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9,726,850원(= 전기요금 34,773,170원 + 도시가스요금 1,953,680원 + AJ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81,515,959원 상당의 매출금반환 채권(원고가 헬스 및 사우나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요금 124,829,000원 중 2018. 2. 1. 이후 매출금에 해당하는 부분), ③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수도요금 합계 42,274,530원(= 관리비 24,636,110원 + 수도요금 17,638,3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④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21,647,000원²⁾ 또는 14,831,600원³⁾ 상당의 매출보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각 채권 합계 185,164,339원⁴⁾ 또는 178,348,939원⁵⁾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가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에게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면 이 사건 매매잔금을 대신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기재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포괄적양도양수계약 당시 이전 대상 각 분양권 및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88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함안토지의 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최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에게 함안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의 공동이행의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이전의무 이행을 지체한 각 분양권 및 부동산 가액 합계 685,200,000원(= 포괄적양도양수계약에 기한 각 분양권 및 부동산 가액 합계 885,000,000원 - 함안토지 가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적양도양수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점, 이 사건 무효 조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무이행자가 R 등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잔금의 지급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뿐 위 매매계약을 배제하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적양도양수계약 이후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조정, 양도 전 수익관계의 정리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된 점, U건물 수분양권 명의자로 보이는 R 등은 피고들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상 분양권 이전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R 등의 협조를 받아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가 운영하던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들이 위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던 당시 부과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합계 36,726,85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들이 2017. 6. 1.경 원고 측으로부터 위 사우나 내 매점을 임차한 AJ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9,726,850원(= 36,726,85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출금반환 채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사우나와 헬스장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회원요금 중 피고들이 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을 인수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요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정기회원 385명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원요금 합계 124,829,000원 중 피고들이 위 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을 인수한 2018. 2.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요금이 합계

81,515,9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회원요금에 대한 반환으로 81,515,9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 채권

먼저, 수도요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미납한 수도요금이 17,638,370원인 사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되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미납한 수도요금은 신규 수도사용자인 피고들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수도요금 17,638,370원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대신 피고들이 위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7,638,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관리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미납한 관리비가 합계 24,636,16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들이 위 미납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미납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매출금보전 채권

제1심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경영 관련한 업무협조기간을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향후 매 분기별로 매출의 변동을 상호 확인하여 2017. 6.부터 2017. 10.까지의 평균매출에 대비하여 매출이 20% 이상 떨어질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떨어진 매출의 5% 상당의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있는 사우나와 헬스장의 2017. 6.부터 2017. 10.까지의 매출액 평균이 49,803,920원[(6월 65,674,500원 + 7월 28,054,800원 + 8월 33,703,600원 + 9월 60,540,400원, 10월 61,046,300원) ÷ 5]인 반면,

피고들이 위 사우나와 헬스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2018. 2.부터 2018. 12.까지의 매출 합계가 251,209,600원이어서 평균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한 후로부터 1년간의 매출을 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의무, 즉 포괄적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출금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마) 공제 계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685,200,000원 상당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138,881,179원(= 구상금 채권 39,726,850원 + 매출금반환 채권 81,515,959원 + 부당이득반환 채권 17,638,370원) 상당의 구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의 양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전보배상금에서 피고들의 구상금 등을 공제하면 546,318,821원(= 685,200,000원 - 138,881,179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546,318,821원7)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3,0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기재 각 분양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로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추가)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4.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배상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이율을 연 12%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21. 3. 25.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감축한 피고 C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판사 최승원, 판사 이상완

1) 피고 C은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구상금 또한 청구를 하고 있으나, 반소 청구취지를 정정하지
는 아니하였다.

2) 을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호에 따라 매출하락 보전특약 기준기간을 2017. 9.부터 2017. 11.까지로 볼 경우

3)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각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호에 따라 매출하락 보전특약 기준기간을 2017. 6.부터 2017. 10.까지로 볼 경우

4) 을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매출보전 채권을 합한 경우

5)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각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매출보전 채권을 합한 경우

6) 설령,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보전 채권이 인정되어 이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전보배상 채권

에서 공제하더라도 잔존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전보배상 채권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원을 초과한다.

7) 위 돈에서 피고 C 주장의 21,647,000원 또는 14,831,600원 상당의 매출금보전 채권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원을 초과한다.